# 소식 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9호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1. 개정이유

「소비자 안전과 식품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표시기준을 신설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개정하여 표시기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용어 및 문구 정비를 통한 규정 명확화(안 Ⅰ-3-다, 라, 마 및 더, 안 Ⅱ-1-너-4)-가) 및 나), 안 Ⅲ-1-나-11)-나)-(15)-(나) 및 (다), 안 Ⅲ-1-나-25)-나)-(15)-(나), 안 Ⅲ-1-나-26)-나)-(14)-(나), 안「별지 1」-1-나-1)-나) 및 다), 안「별지 1」-1-바-3)-차))

1) 복합원재료는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것으로 용어의 정의 명확화
2)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의 영문명 및 약자 예시 신설
3)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수정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행 문구를 개정하여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잉크·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 명확화
4) 식육함유가공품과 알함유가공품의 살균·비살균·멸균한 제품의 표시 규정 명확화
5) 절임식품, 조림식품의 살균·멸균제품 표시 문구 명확화
6)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기준에 업종이 다른 유통전문판매업과 식품소분업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분리
7) 천연향료,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향료', '합성향료'로 표시하고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나. 비알코올(Non-alcoholic) 음료의 표시 규정 신설(안 Ⅱ-3-아)

1) 탄산음료, 혼합음료 등에 알코올 음료가 아니라는 표시로 주류 대용으로 마시는 제품임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음주습관이 조기에 형성되지 않도록 규정 마련 필요
2)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고,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탄올 1% 미만 함유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조화(안 Ⅱ-2-라-11), 안 Ⅲ-1-가-3)-가), 안 Ⅲ-1-나-19)-가)-(5), 안 Ⅲ-1-나-29)-가)-(7), 안 Ⅲ-1-나-29)-가)-(25), 안 Ⅲ-1-나-29)-나)-(15)-(라), 안 Ⅲ-1-나-29)-나)-(15)-(타))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아마씨는 일일섭취량 및 1회 섭취량이 정해진 제한적 식품원료이므로 이를 준수할 표시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아마씨를 사용

# 소식

한 제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함량(중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된 식품유형인 '환자용 식품',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사양벌꿀', '사양벌집꿀', '한천'을 고시에 반영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양벌(집)꿀의 식품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사양벌(집)꿀의 정의를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소비자 알 권리 향상

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효소식품의 효소규격(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이 정량규격(표시량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효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정

라. 주류의 원재료명으로 알코올 표시 허용 [안 Ⅲ-1-나-27)-나)-(14)-(가), 안 Ⅲ-1-나-27)-다)-(4)]

1) 주세법에 주류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의미하므로 에탄올을 알코올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주류의 원재료명 중 에탄올은 알코올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 사항 반영(안 Ⅲ-2-가-1)-카), 안 Ⅲ-2-나-1)-카), 안 Ⅲ-1-나-1)-다), 안「별지 1」-1-바-2)-가) 및 라), 안 [표 4], 안 [표 5], 안 [표 6])

1) 식품첨가물의 품목명 및 함량 표시대상을 화학적합성품에서 혼합제제류로 변경

2) 식품첨가물의 품목명 및 주용도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 조화

바. 복합원재료의 표시방법 개선(안「별지 1」-1-바-1)-마))

1) 영업자가 구매하여 사용하는 복합원재료의 명칭 변경시 표시사항을 변경해야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

2) 식품에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 또는 식품의 유형 중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사. 다른 법령의 원재료 표시방법도 준수하도록 규정 신설 (안「별지 1」-1-바-1)-사))

1)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기계적 회수 식육을 원재료로 사용시 원재료명에 기계발골육 사용표시를 하여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표시 규정 부재

2)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아. 조사처리식품에 실제 사용한 방사선의 종류 표시 허용 (안「별지 2」-2)

1) 조사처리식품에 대한 오해로 식품조사기술이 활용되고 있지 않아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

2) 방사선조사 문구 이외에 실제 사용한 방사선의 종류인 "감마선", "전자선"도 표시 허용

###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10조 및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소식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6-701호, 2016. 11. 3 (2016. 11. 3 ~ 2017. 1. 2)

2) WTO/TBT 공지 : 2016. 11. 11 ~ 2017. 1. 31

3) 규제심사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2017. 11. 9 ~ 2017. 11. 10)

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제 603회 예비심사(제2017- 565호, 2017. 11. 27, 비중요 규제)

**부칙 〈제2017-99호, 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 · 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 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 · 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 · 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 소식 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0호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1. 제정 이유

국제조화와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산성피로인산칼슘"을 신규 지정하고, "분말비타민A" 등의 규격 시험법 정비 등 18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정하며, 식품공전과 식품유형이 일치되도록 "소브산류" 등의 사용대상 식품 정비 및 "황산아연"을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등 136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액체질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종제품에 남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식품 제조 시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스팀 생산용 보일러의 청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관제의 기준 · 규격을 신설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가. "산성피로인산칼슘", "청관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의 신규 지정 및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 범위 확대 필요

2) 식품의 산도조절제, 팽창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산성피로인산칼슘)

3)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스팀 생산용 보일러의 청관 목적으로 구연산삼나트륨 등 40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관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Ⅱ. 4. 가., II. 5. 가. 청관제)

4) 다양한 제품 개발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

나. 총칙 개정

1) 청관제의 관리 규정 신설에 따른 용도 신설 및 일부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

2) 용어의 정의에 "청관제"의 용도 정의 신설 및 어패냉동품의 정의 중 고래고기제품 삭제(I. 2. 1) (23), 3) (14))

3) 용어 정의 신설 등 규정 명확화

다. "분말비타민A" 등 18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1) 유해시약을 저독성의 시약으로 대체하도록 시험법 개선 및 국제조화를 통한 일부 품목의 정의 개선 필요

2) "분말비타민A" 등 16품목의 시험법 정비(II. 4. 가. 분말비타민A, 스모크향, 스테비올배당체, 스테아릴젖산나트륨, 스피룰리나색소, 아미드펙틴, 에스테르검, 에틸바닐린, 유게놀, 유칼리프톨, 이소유게놀, 초산비닐수지, 카페인, 펙틴, 포스포리파아제, 폴리이소부틸렌)

3) "펙티나아제"의 제조균주로서 "Aspergillus aculeatus"가 포함되도록 정의 개정(II. 4. 가. 펙티나아제)

4) "합성향료"의 정의에 희석제 첨가 규정 추가 및 "isopropyl sorbate"의 이명 정비(II. 4. 가. 합성향료)

5) 시험법 개선을 통한 시험자의 건강 보호 및 제조방법 개선에 따른 식품산업 활성화

라. "감색소" 등 137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 소식

1) 식품공전 전면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유형 정비 및 국제조화를 통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개선, 안전한 사용을 위해 기준 강화 필요
2) 식품공전의 식품유형과 일치되도록 “감색소” 등 134품목의 사용기준 정비(II. 5. 가. 감색소, 고량색소, 규산마그네슘, 규산칼슘,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금박, 김색소, 나타마이신, 네오탐, 니코틴산, 니코틴산아미드, 데히드로초산나트륨, 동클로로필, 동클로로필린나트륨, 동클로로필린칼륨,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라우릴황산나트륨, 락색소, 루틴, 마리골드색소, 메타규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몰식자산프로필, 몰포린지방산염, 무궁화색소, 무수아황산, 베리류색소,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불화나트륨, 비트레드, 사프란색소, 산성아황산나트륨, 셀렌산나트륨,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수소, 수용성안나토, 수크랄로스, 스모크향, 스테비올배당체, 스테아릴젖산나트륨, 스피룰리나색소, L-시스테인염산염, 시아너트색소,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심황색소, 아세설팜칼륨, 아셀렌산나트륨, L-아스코빌스테아레이트, L-아스코빌팔미테이트, 아질산나트륨, β-아포-8'-카로티날, 아황산나트륨, 안나토색소,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알팔파추출색소, 양파색소, 오존수, 오징어먹물색소, 옥시스테아린,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이산화규소, 이산화염소(수), 이산화티타늄, 이소프로필알콜, 이초산나트륨, 자단향색소, 자주색고구마색소, 자주색옥수수색소, 자주색참마색소, 적무색소, 적양배추색소,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칼슘, 차아황산나트륨, 차즈기색소, 철클로로필린나트륨, 초산비닐수지, 치자적색소, 치자청색소, 치자황색소, 카라멜색소, 카로틴, β-카로틴, 카민, 카카오색소, 코치닐추출색소, 클로로필, 타마린드색소,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토마토색소,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파프리카추출색소, 파피아색소, 포도과즙색소, 포도과피색소, 폴리에틸렌글리콜,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프로필렌글리콜, 피칸너트색소, 향신료올레오레진류, 홍국색소, 홍국황색소, 홍화적색소, 홍화황색소, 효소처리스테비아)
3) “사카린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에 떡류, 복합조미식품 등 추가 및 식품유형 정비(II. 5. 가. 사카린나트륨)

# 소식

4) “황산아연”의 사용대상 식품에 기타주류 추가(II. 5. 가. 황산아연)

5) 액체질소가 최종식품에 액체로서 잔류하지 않도록 “질소”의 사용기준 강화(II. 5. 가. 질소)

6) 절임식품에 대한 식용타르색소류의 단서조항 정비 및 곡류가공품 등에 대한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개정(II. 5. 가. 식용색소녹색제3호, 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식용색소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7) 식품공전과의 식품유형 일치를 통한 기준 적용 명확화, 식품산업 활성화 및 안전기준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7-233호, 2017. 6. 15)

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17. 6. 27.) : 비대상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17. 9. 8.) : 원안의결

2) 행정예고(공고 제2017-310호, 2017. 8. 29.)

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17. 8. 25.) : 심사대상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17. 11. 10.) : 원안의결

다) 자체 규제심사(2017. 11. 16.) : 원안의결

라) 법제처 규제 사전검토(2017. 11. 17.) : 의견없음

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017. 11. 27.) : 비중요 규제

# 소식 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1호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고시

### 1. 개정 이유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총리령 제1367호, 2017.3.7.)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 2014.11.14.)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 대상 변경(안 제4조, 제5조)

– (기존)신고 · 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

→ (변경)신고 · 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

# 소식 4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2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1. 개정 이유

갈고리흰오징어 등 동물성 수산물 6종과 도두의 꼬투리 등을 식품원료로 추가하고 큰조롱(이명: 백수오)를 물추출물에 한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식품원료별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식품원료 목록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어유의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냉동식품의 해동 판매 주체를 명확히 하며 굽거나 튀겨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기타어육가공품의 실온 유통을 허용하고, 연육 및 어육반제품은 밀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실온 보관 음료류의 냉동판매를 허용하고, 택배 운송 냉동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정하며, 발효식초의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을 사용을 허용하고 식용우지 및 돈지, 생소시지류의 제조 · 가공기준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목록에 새로이 규명된 2종을 추가 신설하고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총질소 및 조단백질, 비타민 B1의 시험법을 개정하며, 관련 문구를 명확히 개정하고자 함

저위해성 식중독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규격에 정량규격을 도입하고 무지유고형분 4% 이상인 커피와 기타 영 · 유아식의 세균수 규격을 개정하며, 영 · 유아용 곡류조제식과 기타 영 · 유아식에 적용되는 크로노박터의 규격을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시행('16.12.29.개정, '18.1.1.시행)에 대비하여 전부개정고시 이후 개정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내용을 반영하고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의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별표 1, 별표 2]

1) 큰조롱(백수오)을 안전성이 확인된 물추출물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조건 신설
2) 식품원료 명칭 명확화[품목명(2품목), 이명(4품목), 학명(14품목), 사용부위(12품목)] 및 중복된 식품원료(14품목)를 통합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의 Fisheries & Aquaculture, WorldFish의 Fishbase 등)에서 어획량에 대한 정보, 식용 근거 및 학명 · 이명 등이 확인된 어류, 갑각류 등 동물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4) 국제낙농연맹(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인된 미생물 4품목(Actetobacter aceti,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lactis, Propionibacterium acidipropionici 및 Lactobacillus sanfranciscensis)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에 추가

# 소식

5)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도두 꼬투리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
6)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명확화
7) 베라알로에 잎의 사용부위와 벨벳빈 열매의 사용조건 명확화

나. 식품원료 별 고유 코드를 부여하도록 식품원료 목록 개정[별표 1, 별표 2]
1) 식품원료 목록 개정시 전체 일련번호 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식품원료 목록 번호 체계를 천단위에서 알파벳, 한글 및 십만단위의 숫자 조합으로 변경하여 식품원료에 고유번호 부여
3) 식품원료에 고유번호 부여로 민원인의 식품원료 사용 편의성을 증진

다. 은대구의 분류 개정[제1. 4. 2)]
1) 식품원료 분류의 수산물 중 은대구를 심해성 어류로 재분류
2) 해양어류 분류 정비로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라. 식품의 제형 규정 명확화 [제2. 2. 11)]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2) 현행 식품공전에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 혼돈되지 않도록 제조 · 가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3) 식품의 제형 규제 규정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여 관련 규정 명확화

마. 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건포류의 황색포도상구균 정량 규격 설정[제2. 3. 4) (2) 나) ②, 제2. 3. 4) (2) 다) ①]
1)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해평가를 통해 현행 불검출 규격에서 정량 규격으로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
2) 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건어포류, 기타 건포류의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규격(n=5, c=0, m=0)을 정량규격(n=5, c=1, m=10, M=100)으로 설정
3) 과도한 열처리 지양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

바. 농약 잔류허용기준 면제 항목 개정[제2. 3. 7) (2)]
1)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잔류하지 않거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없는 성분에 대한 기준설정 면제 지정 필요
2) 잔류허용기준 면제목록에 차나무오일 등 3종 추가
3) 인체위해가능성이 낮은 농약들에 대한 면제목록 지정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사. 기타어육가공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제2. 4. 7)]
1) 어육가공품은 10℃이하에서 보존 및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분함량이 낮아 실온에서 유통하여도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품목의 경우 실온 유통 허용 필요
2) 굽거나 튀겨 제조된 수분함량이 적은 기타어육가공품을 실온에 유통가능하도록 허용
3) 안전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

# 소식

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아. 냉동식품의 해동판매 주체 명확화[제2. 4. 14)]

1) 냉동제품을 해동 판매할 수 있는 제조업자의 종류에 대하여 명확화 필요
2) 제조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로 개정
3) 해동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업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 해소

자. 실온 음료류의 냉동 유통 허용[제2. 4. 16)]

1) 실온제품은 냉동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절기에 제품의 온도에 따라 품질 변화가 적은 음료류를 냉동하여 판매 불가능
2) 제조 · 가공업자가 냉동상태에서의 품질을 담보한 제품에 한하여 실온 또는 냉장보관의 음료류, 발효유류를 판매업자가 냉동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3) 안전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취향에 따른 다양한 식품 판매 가능

차. 냉동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제2. 4. 19)]

1) 냉동식품을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진 냉동온도(−18℃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안전한 범위 내에서 보존 및 유통온도 기준 완화 필요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냉동제품이 유통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품이 얼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온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 신설
3) 보존 및 유통기준의 합리적 개정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카. 어유의 식품유형 신설 [제4. 7. 7−2]

1) 국제적으로 어유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어유의 국제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어유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 · 규격 신설 필요
2) 어유의 식품유형 및 기준 · 규격 신설
3) 어유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 · 규격 관리로 식품안전관리 제고

타. 커피의 세균수 규격 개정[제4. 9. 9−2 5) (5)]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16.12.29.)에 따라 커피를 함유한 가공유류는 커피로 분류되어 강화된 커피의 세균수 규격 적용으로 업계 혼선 발생
2) 기존 커피우유의 제조 · 가공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미생물 규격 관리 필요
3) 무지유고형분 4% 이상인 커피에 한하여 세균수 규격 이원화 관리

파. 영 · 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규격 개정[제4. 10. 10−5 5), 제4. 10−6 5)]

1) 영 · 유아용 곡류조제식과 기타 영 · 유아식에 대한 크로노박터 규격을 12개월 미만에 적용 할 수 있도록 문구 명확화
2) 기타 영 · 유아식 중 멸균처리된 제품은 세균수 음성 규격(n=5, c=0, m=0) 적용하고 제조공정의 특성상 살 · 멸균이 어려운 분말은 세균수 규격 적용 제외

하. 발효식초, 어육가공품의 제조 · 가공기준 개정[제4. 12.

# 소식

12-1 3) (2) 및 제4. 19. 19-1 3) (2)]

1) 다양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제조 · 가공기준 개정 필요
2)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 가공기준 개정
3) 연육 및 어육반제품은 밀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추가
4) 제조 · 가공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거. 일반시험법 개정 [제7. 2.1.3.1, 제7. 2.2.2.2, 제7. 3. 3.3 3.3.4 가. 4), 제7. 6.8.3.1, 제7. 6.8.3.2, 제7. 7.1.3.12, 제7. 7.1.4.138, 제7. 7.1.3.139, 제7. 7.1.4.140, 제7. 7.1.4.146, 제7. 7.1.4.155, 제7. 7.1.4.156, 제7. 7.1.4.157, 제7. 7.1.4.159, 제7. 7.1.4.176, 제7. 7.1.4.208, 제7. 7.1.4.209, 제7. 7.1.4.210, 제7. 8.1, 제7. 8.3.3, 제7. 8.3.5, 제7. 8.3.7, 제7. 8.3.17, 제7. 8.3.23, 제7. 8.3.26, 제7. 8.3.27, 제7. 8.3.33, 제7. 8.3.37, 제7. 8.3.40, 제7. 8.3.42, 제7. 8.3.55, 제7. 8.3.58, 제7. 8.3.66, 제7. 8.3.68, 제7. 8.3.87, 제7. 8.3.93, 제7. 8.3.96, 제7. 8.3.101, 제7. 8.3.104, 제7. 8.3.107, 제7. 8.3.113, 제7. 8.3.114, 제7. 8.3.115, 제7. 8.3.116, 제7. 8.3.117, 제7. 9, 제7. 10. 10.9, 제7. 11, 제7. 11. 11.1.5, 제7. 11. 11.1 11.1.12]

1) 총질소 및 조단백질 검사법 중 킬달법의 분석원리 문구 명확화
2) 비타민B1 시험법 중 시험용액의 조제방법 문구 명확화 및 LC-컬럼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 구입이 어려워, 현행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된 비타민B1 시험용 컬럼과 통일
3) 비타민A 추출시약 중 환경 오염될 수 있는 시약인 벤젠을 '석유에테르'로 변경
4) 효소식품 중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정량시험법 개정
5) 유전자변형식품의 승인 품목 추가 및 시험법 개정
6) 유전자변형 카놀라에 대한 정량시험법 신설 및 개정
7) 3-MCPD 시험법 중 정제컬럼 등 개정
8) 오염물질 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관련 규정을 통합 정비 및 시험법 재분류
9)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일반시험법의 단위를 국제단위로 통일
10) 농약 티오디카브의 메토밀 보정계수 개정 및 스피록사민 등 4종에 대한 농약 시험법 신설 및 개정
11)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중 일반사항 및 바시트라신 등 10종에 대한 시험법 개정
12) 시험법 신설 및 개정으로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너. 전부개정사항 오기 정정 및 문구 명확화[제2. 3. 5) (1), 제2. 4. 4), 제4. 7-2 3) (1), 제4. 10. 10-4 5) (14), 제4. 16-2 3) (2), 제7. 3. 3.3 3.3.4 가. 4)]

1) 산화방지제 시험법이 기개정되었으나(식약처 고시 제2016-64호, 2016.6.30.), 전부개정고시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음
2) 중금속, 벤조피렌 규격이 적용되는 식용유지류를

# 소식

식품유형 명칭으로 개정

3) 실온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명확화

4) 설탕류의 이산화황 규격 단위 정정

5) 식용우지와 식용돈지의 제조 · 가공기준 정정

6) 환자용식품의 유형 통합으로 기존 당뇨환자용식품과 신장질환자용식품의 조단백질, 조지방 규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용식품의 규격 정비

7) 조제유류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통합됨에 따라 유단백알레르기 영 · 유아용 조제식과 특수의료용도 영 · 유아용 조제식에 조제유류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8) 생소시지류에 내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케이싱용 내장은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더.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3 중 (1) 이미녹타딘, (7) 다미노자이드, (9) 델타메트린, (14) 디메토에이트, (19) 디코폴, (20) 다이쾃, (22) 디클로플루아니드, (23) 디클로란, (24) 디클로베닐,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4) 메빈포스,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40) 메톨라클로르, (41) 메토브로뮤론, (43) 메톡시클로르, (44) 메트리뷰진, (46) 메틸브로마이드, (47) 모노크로토포스, (54) 벤타존, (58) 비에치시,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5) 아진포스메틸, (78) 알라클로르,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2) 에티오펜카브,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93) 오메토에이트, (100) 이마잘릴,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2) 카벤다짐, (113) 카보페노티온, (114) 카보퓨란, (115) 카복신, (116) 카탑, (118) 캡탄, (124) 클로로벤질레이트, (129) 클로르펜빈포스, (130) 클로르프로팜, (131) 클로르피리포스, (132)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33) 테부코나졸, (148) 트리플루랄린, (149) 트리플루미졸, (152) 티오벤카브, (153) 파라티온, (155) 파라티온메틸, (156) 파클라부트라졸, (157) 퍼메트린, (159) 페나미포스,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66) 펜뷰타틴옥사이드, (170) 펜토에이트, (173) 포레이트, (177) 포스파미돈, (186) 프로클로라즈, (188) 프로파모카브, (192) 프로피코나졸, (194) 피레트린, (200) 헥사코나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10) 페나자퀸,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1) 디티아논,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4) 펜피록시메이트, (235) 포스티아제이트, (236) 피리프록시펜,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39) 플루아지남,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55) 파목사돈, (259) 피리메타닐, (285) 아크리나트린, (286) 에트리디아졸, (290) 인독사카브, (299) 티플루자마이드, (301) 펜헥사미드, (303) 포클로르페뉴론,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38) 티아클로프리드,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5) 스피로디클로펜, (361) 테플루트린, (370) 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80) 피리

# 소식

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4) 메트라페논,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1) 아이소피라잠, (432) 사플루페나실,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6) 플루티아닐, (437) 플룩사피록사드, (438) 피리오페논,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2) 아이소페타미드, (453) 만데스트로빈,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4) 스피록사민, (465) 톨펜피라드, (466) 펜플루펜]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농약 14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러.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표시[별표 3 중 (5) 노르플루라존, (6) 니트라피린, (8) 다이아지논, (9) 델타메트린, (10) 도딘, (11) 멥틸디노캅, (12) 디디티, (13) 디메티핀, (14) 디메토에이트, (15) 디설포톤, (16) 디우론, (18) 디캄바, (19) 디코폴, (20) 다이쾃 (21) 디클로르보스, (22) 디클로플루아니드, (23) 디클로란, (24) 디클로베닐, (25) 디클로포프메틸, (27) 디페닐아민, (28) 디펜아미드, (30) 리뉴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33) 말릭하이드라자이드, (34) 메빈포스, (35) 메토밀, (36) 메티오카브, (37) 메카밤, (38) 메탈락실, (39) 메타미도포스, (40) 메톨라클로르, (41) 메토브로뮤론, (42) 메토프렌, (43) 메톡시클로르, (44) 메트리뷰진, (47) 모노크로토포스, (48) 바미도티온, (49) 바이오레스메트린, (52) 벤디오카브, (54) 벤타존, (55) 뷰프로페진, (56) 브로마실, (57) 브로모프로필레이트, (58) 비에치시, (59) 비터타놀, (60) 비페녹스, (62) 빈클로졸린, (63) 세톡시딤, (64) 시마진,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0) 아닐라진, (73) 아세페이트, (75) 아진포스메틸, (76) 알드린 및 디엘드린, (77) 알디카브, (78) 알라클로르,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1) 에테폰, (82) 에티오펜카브, (83) 에티온, (84) 에탈플루랄린,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87) 에톡시퀸, (88) 에트림포스, (89) 에틸렌디브로마이드, (90) 엔도설판, (91) 엔드린, (92) 엠시피비, (93) 오메토에이트, (94) 옥사디아존, (95) 옥사딕실, (96) 옥사밀, (97) 옥시풀루오르펜, (98) 오쏘-페닐페놀, (99) 이사-디, (100) 이마잘릴, (102) 이산화황, (103) 아이소펜포스, (105) 이프로디온, (106) 이피엔, (107) 키노메티오네이트, (108) 티오메톤, (111) 카바릴, (112) 카벤다짐, (113) 카보페노티온, (114) 카보퓨란, (115) 카복신, (116) 카탑, (117) 캡타폴, (118) 캡탄, (119) 퀴잘로포프에틸, (120) 퀸토젠, (121) 클레토딤, (122) 클로마존, (123) 클로펜테진, (124) 클로로벤질레이트, (125) 클로로탈로닐, (126) 클

# 소식

로르단, (127) 클로르메쾃, (128) 클로르설퓨론, (129) 클로르펜빈포스, (130) 클로르프로팜, (134) 터부트린, (136) 테크나젠, (137) 테트라디폰, (138) 톨릴플루아니드, (139) 톨클로포스메틸, (141) 트리아디메놀, (142) 트리아디메폰, (143) 트리아조포스, (144) 트리알레이트, (146) 트리클로피르, (147) 트리포린, (148) 트리플루랄린, (150) 티아벤다졸, (152) 티오벤카브, (153) 파라티온, (154) 패러쾃, (155) 파라티온메틸, (156) 파클로부트라졸, (157) 퍼메트린, (158) 페나리몰, (159) 페나미포스, (160) 페노트린, (161) 페녹사프로프-에틸,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65) 펜뷰코나졸, (166) 펜뷰타틴옥사이드, (167) 펜설포티온, (168) 펜티온, (169) 펜코나졸, (170) 펜토에이트, (171) 펜프로파트린, (172) 펜틴, (173) 포레이트, (174) 포모치온, (175) 포사론, (176) 포스멧, (177) 포스파미돈, (178) 폭심, (179) 폴펫, (180) 플루실라졸, (181) 플루발리네이트, (182) 플루시트리네이트,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84) 프로메트린, (185) 프로사이미돈, (187) 프로파닐, (188) 프로파모카브, (189) 프로파자이트, (190) 프로페노포스, (191) 프로폭서, (192) 프로피코나졸, (193) 피라조포스, (194) 피레트린, (195) 피리미카브, (196) 피리미포스메틸, (197) 피리미포스에틸,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199) 헥사지논, (202) 헵타클로르, (208) 테부펜피라드, (211) 프로티오포스, (213) 피라클로포스, (215) 피프로닐, (217) 디메틸빈포스, (219) 디아펜티우론, (220) 디에토펜카브, (221) 디티아논, (228) 아족시스트로빈, (232) 트리사이클라졸, (237) 피메트로진, (240) 페녹시카브, (241) 뉴아리몰, (247) 실라플루오펜, (255) 파목사돈, (256) 플루오로이미드, (257) 플루퀸코나졸, (258) 피리다펜티온, (260) 할펜프록스, (262) 헥사플루뮤론, (263) 페노티오카브, (269) 메톨카브, (274) 벤족시메이트, (278) 사이클로프로트린, (280) 시노설퓨론, (282) 아닐로포스, (287) 이나벤파이드, (289) 이사조포스, (292) 퀸클로락, (294) 터부틸라진, (295) 테닐클로르, (298) 티아조피르, (302) 포세틸-알루미늄, (307) 프탈리드, (312) 피라족시펜, (313) 피로퀼론, (315) 피리미디펜, (316) 피리부티카브, (317) 하이멕사졸, (321) 디노테퓨란, (322) 디메피퍼레이트, (332) 클로티아니딘, (336) 티디아주론, (337) 티아메톡삼, (343) 플루록시피르, (346) 피라플루펜에틸, (349) 노발루론, (353) 메트코나졸, (355) 스피로디클로펜,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2) 트리아자메이트, (369) 프로피소클로르, (372) 메코프로프-피, (373) 스피로메시펜, (374) 알라니카브, (379) 플루아크리피림, (385) 펜클로림, (388) 시안화수소, (397) 옥사디아길, (398) 퀴날포스, (414) 퀸메락,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8) 피페로포스, (420) 린단, (423) 피콕시스트로빈, (432) 사플루페나실]

1) 과거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잠정기준임을 표시
2) 노르플루라존 등 236종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T로 표시
3)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국내외적으로 알려 PLS 시행

# 소식

이전에 필요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머.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 중 (8) 디클로르보스, (10) 메토밀, (20) 사이로마진, (58) 포스멧, (62) 프로폭서]**

1)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중복 설정된 기준 정비 필요

2) 디클로르보스 등 5종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중복 설정된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합리적 식품 안전관리 제고

**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5 중 (1) 겐타마이신, (2) 나이카바진, (3) 네오마이신, (9) 디클라주릴, (17) 살리노마이신, (22) 아목시실린, (26) 에리스로마이신, (30) 옥소린산, (31) 옥시테트라싸이클린/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테트라싸이클린, (41) 트리클라벤다졸, (66) 콜리스틴, (74) 이미도캅, (86) 세파졸린, (94) 옥시벤다졸, (96) 카나마이신, (103) 트리메토프림, (185) 디클로로보스, (186) 사이로마진, (187) 날리드, (188) 메토밀, (189) 포스멧, (190) 클로르피리포스, (191) 카벤다짐, (192) 프로폭서, (193) 퍼메트린]**

1) 동물용의약품 중 국내 허가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2) 겐타마이신 등 18종의 동물용의약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디클로르보스 등 살충제 9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4)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서. 전부개정고시 부칙 개정[고시 제2016-154호 부칙]**

1) 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2016.12.29.)에 따라 신설된 4개의 식품유형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미리 적용받길 원할 경우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추가

**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시행 대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사항 반영[제2. 1, 제2. 4, 제4. 17-1, 제7. 4, 제7. 5]**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7-24호, 2017.4.14) 주요내용

- 알가공품의 제조시 알내용물을 비위생적인 방법(압착, 원심분리 등)으로 채취 금지
- 살모넬라 배양시험에서 정치과정을 삭제하여 검사 소요시간 단축
- 분자생물학적 신속검출법(PCR을 이용한 스크리닝 시험법) 도입
- '원료알', '원료용 알'을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식용란으로 문구 통일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7-84호, 2017.11.2) 주요내용

- 달걀의 세척기준 신설
- 세척한 달걀의 냉장 보존 및 유통 의무화
- 냉장보관 중인 달걀의 냉장 보존 · 유통 의무화
-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을 산란일자로 설정

# 소식

– 가공용 식용란의 세척 및 보관기준 신설
– 할란 후 비살균상태의 알내용물 보관기준 신설(5℃ 이하 냉각 후, 72시간 초과하여 보관 금지)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7-290호, 2017. 8. 7.(2017. 8. 7. ~ 2017. 10. 10.)

나) 공고 제2017-366호, 2017. 9. 29.(2017. 9. 29. ~ 2017. 11. 28.)

다) 공고 제2017-411호, 2017. 11. 16.(2017. 11. 16. ~ 2017. 12. 6.)

2) 식품 및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1차)2017.12.4., (2차)2017.12.7.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1차)2017.11.2., (2차)2017.12.5.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1차)2017.5.18., (2차)2017.8.18., (3차)2017.11.15.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심의 (1차)2016.12.20., (2차)2017.11.29.

마)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1차)2016.12.13., (2차)2017.4.26.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비대상 [제2017-1860호(2017.7.6.), 제2017-2643호(2017.9.15.), 3240호(2017.11.13.)]

# 소식 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3호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고시

### 1. 개정 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전부 개정으로(제2016-154호, '16.12.29, 시행 '18.1.1) 식품의 유형이 전면 재분류됨에 따라「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유형에 맞게「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반영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에 따라 식품유형이 재분류되어 그에 맞게 개정

○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이 없어지고 '식품별 기준·규격'으로 통합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별표1-1](규격외 일반가공식품 검사항목) 삭제

# 소식 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9호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개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프탈레이트류 시험법 및 1,4-부탄디올 시험법 등을 개선하는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정의 개정 등 3품목 기준·규격 신설·개정

1)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정의 개정(Ⅲ. 1. 1-22)
2) 부틸렌숙시네이트 공중합체 명칭 및 정의 신설(Ⅲ. 1. 1-37)
3) 히드록시안식향산폴리에스테르 기준·규격 분리 신설(Ⅲ. 1. 1-39)

나. 시험법의 합리적 개선 및 문구 정비

1) 재질별 용출시험용액 조제법 통일화(Ⅳ. 2. 2-6)
2) 프탈레이트류 시험법의 질량분석기 측정조건 개선(Ⅳ. 2. 2-19)
3) 멜라민 시험법 및 1,4-부탄디올 시험법의 표준용액 조제법 개선(Ⅳ. 2. 2-28, 2-41)
4)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낙하 및 누수 시험법 이관(Ⅳ. 2. 2-58)
5) 시험법 문구 등 정비(Ⅲ. 6., Ⅳ. 2. 2-6, 2-9, 2-27, 2-31, 2-35, 2-44, 2-45, 2-50, 2-53, 2-54, 2-55, 2-56)

다. 재검토기한 설정

1) 규제의 재검토 기한 재설정(Ⅴ.)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7-367호, 2017. 9. 29.(2017. 9. 29. ~ 2017. 11. 3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완료(2018. 12. 18.) : 원안의결
3)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17. 11. 14.) : 비대상

# 소식 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11호

##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 위생요건」 일부개정 고시

### 1. 개정 이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축산물 유형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재편됨에 따라 수입허용국가의 축산물 목록에 변경된 유형을 반영하여 민원인과 수출국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부 중복된 조항에 대하여 통합 정비 및 삭제하여 수출국에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에 따른 축산물의 유형 변경 반영(제2조)

나. 수출국과 해외작업장이 준수하여할 요건에 대하여 중복 문항을 통합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제4조)

다. 수출국 외의 국가를 거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출 위생증명서 첨부 조항 신설(제5조)

라. 「수입식품법」에 따른 사항 이외의 질병으로 수입허용국가의 축산물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생평가대상이 아니므로 관계조항 삭제(현행 제12조)

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축산물 중 게시형식 변경 및 신규 수입허용축산물 반영(별표)

1) 지정검역물과 비지정검역물을 구분하는 형식에서 원료와 그 가공품의 형태로 변경

2) 신규 수입허용 된 브라질산 돈육, 포르투갈 돈육 및 그 가공품 등을 목록에 반영

바.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알가공품의 한시적인 수입허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부칙 및 별표)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7. 9. 22. ~ 2017. 11. 26)

2)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7. 9. 26.)

# 소식 8

##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13호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훈령) 제정

### 1. 제정 이유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제17조의3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설치 및 구성 (안 제2조~안 제4조)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관계행정기관(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포함)의 담당과장으로 함

3) 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

나. 위원장의 직무 (안 제5조) 및 협의회 개최 (안 제6조) 등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안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 소식 9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13호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 1. 개정 이유

영양소 원료 확대를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비타민 · 무기질 원료에 대한 규격 적용 방안을 신설하고, 비타민 C와 철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추가하고자 함

영양소 기준치 개정에 따라 비타민 D와 크롬의 일일섭취량을 개정하고, 타 고시 등과 용어를 통일하여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영업자 및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원료의 규격 적용

1) 영양소 원료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로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 등 외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영양소의 원료 추가

1) 비타민 C의 원료로 트레온산 함유 아스코르빈산칼슘(트레온산은 2% 이하) 추가

2) 철의 원료로 구연산제일철나트륨(Sodium ferrous citrate) 추가

다. 영양소의 일일섭취량 개정

1) '15년 11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에 따라 영양소 기준치 현행화

2) 비타민 D, 크롬의 최소함량기준 개정

3) [별표 2] 영양소 기준치 및 [별표 3]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현행화

4) '영양소'를 '영양성분'으로 용어 통일하여 타 고시 등과 일관성 제고

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섭취 시 주의사항 적용

1)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의 기능성 중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한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 적용

마. 시험법 개정

1) 비타민 E, 요오드, 베타글루칸, 계피산, 카테킨, 총 플라보노이드, 대두이소플라본, 총 폴리페놀, 깅콜릭산, 히알루론산, 알파에스1카제인, 글루코실세라미드의 시험법 개선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7-134호(2017. 3. 20. ~ 2017. 4.

# 소식

21.)
나) 공고 제2017-306호(2017. 8. 24. ~ 2017. 10. 23.)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 기능성원료 · 성분 인정 및 기준 · 규격분과 (2017. 12. 20.)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제2017-134 (2017. 3.16), 제2017-306호 (2017. 8. 16)

# 소식 10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호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제정 고시

### 1. 개정 이유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으로 각각 이원화되어 효율적 제도 운영이 어려움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2016.12.29.) 및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7-57호, 2017.6.30.)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유형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검사항목 정비 필요

### 2. 주요 내용 (안 제3조2항[별표] 제2호가, 나, 안 제4조)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125호, 2014.6.5.)과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식약처 고시 제2016-77호, 2016.8.4)의 영업자 검사 이행에 관한 내용을「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으로 통합

나. 축산물가공품별 검사항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반영(안 별표1)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7. 9. 15. ~ 2017. 10. 10.)

2) 재행정예고(2017. 12. 12. ~ 2018. 1. 2.)

3)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7. 7. 17.)

# 소식 1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4호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1. 개정 이유

이물 발견사실에 대한 보고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신청 기한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안 제3조2항[별표] 제2호가, 안 제4조)

가. 영업자 이물 발견사실 보고 제외 규정 명확화(제5조)

1) 현행 영업자 이물 발견사실 보고 제외 규정 중 이물 등 증거제품 제공에 대한 소비자와 영업자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여 보고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 미약

2) 이물 등 증거제품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보고 대상에서 제외

3) 이물 발견사실 보고 제외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혼선 방지

나.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신청 기한 신설 (제7조)

1) 조사 종결 후 상당기간이 지난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신청할 경우 제조환경(계절변화, 설비변경 등)의 변화로 원인추적 곤란

2) 이물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이의)신청 기한을 조사기관으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회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설정

3) 업무 처리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

다. 이물 혼입 원인조사 시 과거 이물 클레임에 대한 서류 확인기간 축소(별표2)

1) 현행 상위법에서는 이물 클레임 관련 서류를 2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동고시에서는 이물 클레임 관련 서류 확인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업무 혼선 초래

2) 과거 이물 클레임에 대한 서류 확인기간을 2년으로 축소

3) 서류 확인기간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17. 11. 28 ~ 2017. 12. 18)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 강화 등 없음

# 소식 1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026호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를 확인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원재료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시험방법을 고시함으로써 원재료의 진위 확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안 제3조2항[별표] 제2호가, 안 제4조)

가. 진위검사를 하여야 하는 원재료 규정

1) 진위검사를 하여야 하는 원재료를 백수오, 한속단으로 규정함

나. 시험방법 규정

1) 원재료의 진위 및 다른 원재료의 혼입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함

다. 이물 혼입 원인조사 시 과거 이물 클레임에 대한 서류 확인기간 축소(별표2)

1) 현행 상위법에서는 이물 클레임 관련 서류를 2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동고시에서는 이물 클레임 관련 서류 확인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업무 혼선 초래

2) 과거 이물 클레임에 대한 서류 확인기간을 2년으로 축소

3) 서류 확인기간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

###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4, (팩스) 043-719-245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소식 1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호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1. 개정 이유

재심사 대상을 명확히 하며,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후대교배종 심사 대상 여부 검토 방법, 처리 기간 등 절차 명확화 및 자료제출의 범위를 신설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및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수수료 개정ㆍ신설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 처리 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안 제3조2항[별표] 제2호가, 안 제4조)

가. 재심사 대상 및 심사자료 명확화[제3조제2호, 제4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나. 후대교배종 심사 대상 여부 검토 방법, 처리 기간 등 절차 명확화 및 검토 자료 제출의 범위 신설[제4조제4항, 제6조, 제12조, 별표 3 및 별지 제2호의3)

다.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호 및 별지 제7호]

라. '기재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6호]

###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7-407호, 2017. 11. 14.(2017. 11. 14. ~ 2017. 12. 4.)

2) WTO 공지 : 2017. 11. 17. ~ 2018. 1. 16.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017. 11. 1.)

정리: 방우석(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